

대만의“수입식품 검사법” 개정 내용

1. 개정 배경
2. 관련기관
3. 개정내용 요점
4. 수정안 실시 이후 영향

참고자료

타이완 수입식품 검사방법 수정조문 대조표

1. 개정 배경

- 2001년 12월 14일 「수입 식품 검사법」을 실시 공포한 이래, 국제간 식품무역이 나날이 복잡 빈번해지고 수입식품 위생안전에 대한 우려도 점점 높아짐으로써 기존 「수입식품검사법」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수정된 「수입 식품 검사법」은 2007년 6월 26일 공포되면서 이미 5번째 맞는 수정 발표임. 이는 수입 식품의 위생 안전 및 품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 보완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는 선진 국가의 관련 규범을 참고하여 실무에 적용 검토한 뒤 이 규정을 수정한 것임

2. 관련 기관

- 대만 행정원 위생서가 「수입 식품 검사법」공포 주관하며 수입 품목 분류 코드별로 수입 규정을 따로 지정하고 있는데, 수입규정 중 FO1으로 표시된 항목은 식품류로 분류되어 모두 상기 법을 따라 검사되어짐

3. 주요 개정 내용

가. 수입 식품 통관 후의 지속적 관리 강화

검사보고의무자(수입업체)가 검사 신청 시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서류 및 자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중앙주관기관 및 검사 집행 기관으로 하여금 통관 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개정 법 제3조 1항, 제2항 및 제 19조 제2항)

- 1) 기존의 법안에서는 검사 신청 관련된 자료를 명확히 규정을 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 시행된 수정안에서는 검사 신청서, 수입식품 기본자료 신청표, 수입신고서 복사본, 중앙주관기관이 위생 안전을 고려한 기타 자료를 명확히 법안에 기재하여 서면적인 자료제공을 강화하였으며, 그 자료 제공 목적은 차후 통관 이후에 상품이 시장 유통 상 문제가 생겼을 시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 삼는데 있음
- 2) 전수 검사 대상이 아닌 상품으로 견본 발취가 어렵거나, 검사소요 시간이 길어 상품에 영향을 줄 경우는 선반입 통관 허가서를 이용하여 먼저 통관 할 수 있

음. 통관 후에도 화주의 책임부분을 더 강화하였는데, 기존에는 상기 되지 않았던 화주가 보증한 위치와 실제 보관지점이 다를 경우 6개월간 검사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명기하여 화주의 상품에 대한 보관 유지 및 책임을 강화하였음. 예를 들어 냉동품이나 무방부제 식품의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 검사 과정을 마친 후에 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먼저 선반입 통관 허가서를 발부 받아 통관을 시킴. 그러나 허가서 발부 시 보관했던 장소와 실제 보관지점이 다르거나 정식 수입 허가 통지를 받기 전에 먼저 이동할 경우 6개월간 수입 중단됨

나. 식품 규정 위반 정도를 「수입식품 연도 검사 계획」의 기초로 삼음.

중앙주관기관이 식품 규정 위반 정도를 「수입식품 연도검사 계획」에 명확히 기입하게 하여, 그것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종류 및 방식을 정하고 중점 검사 항목에 적용하도록 함

(개정법 제7조 제1항 두 번째 사항, 제8조 첫 번째 사항, 제 9조 첫 번째 사항 및 제 10조 제1항 첫 번째 사항에서 보임)

기존 통관시 식품 위생안전 표준을 위반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수입식품 연도 검사계획」에 그 상품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차기 수입시 기본 자료로 삼고 전수검사, 강화발체, 일반발체 등의 검사 종류를 다르게 책정함. 그러나 전수검사 대상 상품이 5번 연속 수입되어 합격되면 강화발체 대상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강화발체 대상 상품도 5번 연속 수입 시 합격되면 일반 발체 검사 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여 개선의 여지에 따라 유동성 있게 적용됨. 단 위험 상품의 적발 확률을 줄이기 위해 어떤 업체는 소량으로 분리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5건 합격 전 한 번의 불량 판정을 받았다면, 5건 합격된 총 물량은 그 전 불량 판정 받은 물량의 3배 이상이어야 함

다. 검사방식을 개선하여 각 업체의 위생 자주관리 강화

발체검사를 일반발체검사와 강화발체검사로 나누고 일반 발체될 확률을 2%~5% 강화 발체될 확률을 20%~50%로 분리 규정하여 각 식품별 차별화된 검사방법을 적용함. 또한 각 등급별 표준 수치를 조정하여 업체 각자가 자주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음(개정법 제6조 두번째 사항, 제8조 두번째 사항, 제9조 두번째 사항 및 제10조 제2항)

1) 기존 법안에는 전수검사 혹은 발체검사 두 방식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전수검사

대상, 강화발췌검사대상, 일반발췌검사대상 3부류로 세분화 시키고, 검사에 적용되는 비용을 업체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이것은 위험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업체가 부담하는 책임을 강화 한 것임. 일본의 통관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각 업체가 위생관리를 주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임

- 2) 위항에 이미 상기한 바와 같이 5번 연속 합격 시에는 기존에 속한 검사 품목 계열에서 탈피(전수검사대상은 강화발췌대상 품목으로, 강화발췌대상 품목은 일반발췌대상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음)함으로써 차후 통관 할 때 보다 수월해질 수가 있음. 그러나 수입 위반 시에는 반대로 더 강화된 통관법이 적용됨
- 3) 최근 중국 대륙 농수산물이 유입 될 시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아카리스 버섯의 카드뮴 잔류량 및 냉동 새우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기존 일반발췌 검사 대상이었던 품목이 강화 발췌 검사 대상으로 수정되어 차기 수입 시 더욱 강화된 통관 검사를 받게 됨

라. 위반 업체의 책임 가중

전수검사등급에 속하는 수입품은 검사보고의무자가 검사 신청 시 실험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업체 각자에게 검사비용을 지불하게 함(개정법 제6조 첫번째 사항 및 제7조)

불합격 상품을 자주 수입한 업체 및 생산지 또는 국가에 관해서, 관련 업체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작성한 개선 계획서 제출을 하게하고, 그 업체 혹은 관련 상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 접수를 중단할 뿐 아니라 확실히 문제가 개선되었을 때만이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개정법 제11조, 제12조)

검사 대상 상품이 전수검사 대상이면서 연속 2번 이상 불합격 처리 되거나, 동일 품목이 6개월 내 3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품은 상기 진술된 바와 같이 업체 혹은 수출국 기관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서면 자료자체가 불합격 또는 기한 내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차 검사 신청 한 뒤 다시 불합격 된 상품은 수입 잠정 중단함

최근 태국산 향채에서 연속 6번에 걸친 농약 잔류량이 검출되면서 대만 당국은 수입업체 또는 태국으로 공문을 보내어 개선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개선이 될 때까지 잠시 수입 중단 처리하였음

4. 수정안 실시 이후 영향

- 내용은 대부분 문자 수정 및 내용 강화 위주로 변경되었고 실시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기존 합법적으로 수입해오던 업체는 법안 수정 후에 아직까지 큰 변화를 느끼지 못 한다고 함
- 기존에는 동일 상품에 한해 3번 이상 불합격 시 수입금지 되었는데, 수정안은 동일 상품, 동일 업체가 3번 이상 불합격 처리되면 수입금지 됨
 - 이전에는 상품에 대한 규제만 있어 동일한 업체가 불량 상품을 브랜드만 바꾸어 수출하는 사례에 대한 규제
 - 수입검사방법 수정안에 표면적으로 명확히 나타내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 불량 상품에 대한 검사 강화 방안이라 볼 수 있음

* 참고 자료 : 타이완 『수입식품검사방법』 수정조문 대조표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제1조 식품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p>	<p>제1조 식품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p>	<p>본 조항 미수정</p>
<p>제2조 본 방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 또는 식품용 세정제 등 상품을 수입할 시 적용되는 위생안전 및 품질 검사이다.</p> <p>본 항에서 지칭한 검사란 식품위생관리법 제27조의 샘플 검사, 검증을 일컫는다.</p> <p>제1항에서 지칭한 상품은 중앙주관기관에서 공고한 관련 품목에 해당된다.</p> <p>재수입 상품의 검사는 중앙주관기관이 정한 작업과정에 따라 처리 한다.</p>	<p>제2조 본 방법은 <u>검사 범위</u>에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 식품 포장 또는 식품용 세정제 등이 포함되고, 수입 혹은 재수입 시 하는 위생 안전 및 품질 검사로써, 관련 품목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것으로 한다.</p> <p><u>중앙주관기관은 본 항의 수입 식품 검사를 식품위생 관리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경제부표준검사국에 의해 집행하게 한다.</u></p>	<p>1. 수입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기구, 식품용기, 식품포장 또는 식품용 세정제 등을 상품으로 통칭하며, 본 방법의 모든 규범의 명확화</p> <p>2. 기존법안 재수입 상품과 관련된 검사는 행정원 위생서가 공고한 「수출식품 반품 처리」과정에 따라 처리하게 하며, 일반 수입상품과는 차별을 둬. 수정법안 제4항 규정으로 이동하여 명확히 표기함.</p> <p>3. 기존법안 제2항 경제부표준검사국에 의해 수입식품 검사를 집행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식품위생관리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어 수정법안에는 따로 표기 하지 않음</p>
<p>제3조 검사 신고 의무자는 아래 열거한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구비하여, 검사 집행기관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p> <p>一. 신청서 二. 수입식품 기본자료 신청표 三. 수입신고서 복사본 四. <u>중앙주관기관이 위생 안전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증빙 서류.</u></p> <p>전 항의 각각의 서면 자료는</p>	<p>제13조 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양식 및 문서는 중앙주관기관이 정한 것으로 한다.</p>	<p>1. 본 조항 순서 변경, 기존법안 제 13조를 본 수정법안으로 이동, 검사신고의무자가 검사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를 명확히 규정함</p> <p>2.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해야 함을 규정하고, 검사신고의무자가 정확하고 완전한 서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검사 신청 접수 처리를 중단함</p>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u>정확하고 완전해야 한다. 검사 집행기관은 검사신고의무자가 전 항에 규정된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검사 신청 접수 처리를 잠정 중단 한다.</u></p>		
<p>제4조 상품이 검사를 통해 식품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에 부합된 것은 수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열거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검사를 면제 받는다.</p> <p>一. 상품이 상호 우혜 관계의 검사 면제 우대 국가가 제조국인 경우 정부가 발급한 검사 합격 증명을 취득한 수입품</p> <p>二. 주 대만 각국 대사관 혹은 외교 면책 특권자가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되어지는 것.</p> <p>三. 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 사용품, 상업용 샘플, 전시회 용품 또는 연구개발 실험 물품 등은 그 금액 및 수량이 <u>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검사 면제에 규정사항에 부합하거나, 중앙주관기관에 의해 검사 면제를 허가 받은 것.</u></p>	<p>제3조 검사를 통해 식품 위생 관리법 관련 규정과 부합한 상품은 수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p> <p>一. <u>수입 상품이 상호 우혜 관계의 검사 면제 우대 국가가 제조국인 경우 정부가 발급한 검사 합격 증명을 취득한 상품</u></p> <p>二. 주 대만 각국 대사관 혹은 외교 면책 특권자가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되어지는 것.</p> <p>三. 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 사용품, 상업용 샘플, 전시회 용품 또는 연구개발 실험 물품 등은 중앙주관기관 혹은 검사집행기관에 의해 검사 면제를 허가 받은 것.</p> <p>四. <u>수입 상품이 중앙주관기관이 규정한 검사 면제의 금액 또는 수량을 초과하지 않은 것.</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조항 순서 변경 2. 문자 수정 3. 기존법안 네 번째 규정 사항에 비 판매 상품은 여전히 검사 면제 대상이지만, 세 번째 규정 사항과 병합 표기
<p>제5조 본 방법의 검사는 <u>아래 열거한 세 가지 조치에 의해 집행한다.</u></p> <p>一. 서류심사: <u>검사원이 신청서 및 각각의 서류에 대해 심</u></p>	<p>제4조 본 방법에 <u>지칭한 검사는 식품위생관리법 제27조의 발취검사, 검증을 지칭하며 아래 열거한 실제적 조치를 포함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항 순서 변경 2. 조항 분리 3.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 법안 제1항의 검사조치 및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u>사</u> 작업하는 것을 가리킨다.</p> <p>二. 현장심사: 검사원이 <u>상</u>품 적하 지점에서 품목대조, 포장 외관 및 표시항목 등을 검사하는 것을 가리킨다.</p> <p>三. 표본검사: 검사원이 적당량의 표본을 채취하여 <u>실</u>현 실로 보낸 후 관능검사, 화학, 생물 또는 물리적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p>	<p>一. 서류심사: 검사 신청을 위해 첨부한 각각의 서류를 심사하는 것을 가리킨다.</p> <p>二. 현장심사: 검사원이 물품 적하 지점에서 <u>집</u>행하는 모든 품목대조, 포장외관 및 표시항목 등에 관한 검사를 가리킨다.</p> <p>三. 표본검사: 검사원이 적당량의 표본을 채취하여 <u>검</u>사 실로 가져 온 후 <u>진</u>행하는 모든 관능검사, 화학, 미생물 혹은 물리적 검사를 가리킨다.</p> <p><u>전</u> 항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아래 열거한 검사 방식에 의거하여 실시한다.</p> <p>一. <u>전</u>수검사: 검사 신청 후 해당 상품을 잠정 보류 조치하여, 검사집행기관 서류심사, 현장 심사 및 표본검사를 통해 그 결과가 규정과 부합하는 것을 수입한다.</p> <p>二. <u>전</u>수심사: 검사 신청 후, 상품을 잠정 보류 조치하여, 검사 집행기관이 서류심사, 현장 심사를 통해 그 결과가 규정과 부합한 것을 수입한다. 단, 위생 안전의 위험이 있을 시 표본검사를 받아야 한다.</p> <p>三. <u>발</u>체검사: 검사 신청 후 검사 집행 기관이 각종 식품 견본을 혼합 발체함에 있어 무작위로 20묶음 당 최하 1 묶음을 발체 한다; 발체된 대상은 잠정 보류시키고, 검</p>	<p>제2항 검사방식을 수정법안 제5조 및 제6조 분리 명시함</p> <p>4. 문자 수정</p>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사 집행 기관이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표본검사를 통해 그 결과가 규정과 부합한 것을 수입한다. 미 발취 대상은 서류심사 또는 필요 시 현장심사를 통해 합격 판정이 난 후 바로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p> <p>四. 서면통과 : 검사 신청 후 검사 집행기관이 서류심사만으로 규정과 부합한지 확인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 위생 안전에 우려가 있을 시에는 표본검사를 거쳐야 한다.</p> <p>五. 감시검사 : 특정 상품으로 분류되는 검사 대상에 대해 집행기관이 수시로 발취 검사하고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규정과 부합하면, 표본을 채취한 뒤 수입을 허가한다.</p> <p>六. 검증등록 : 검사 신청 상품을 중앙주관기관이 등록하는 것으로, 위생안전시스템 하에 모든 상품이 생산 제조되었음을 인정하는 상호 계약에 속한다. 서류심사 혹은 필요시 현장심사가 규정과 부합하다고 판정 되면 수입을 허가한다.</p>	
<p>제6조 중앙주관기관이 수입 상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위험성 정도에 따라 아래 열거한 방식대로 검사를 실시한다.</p> <p>一. 전수검사 : 검사 신청 후 검사집행기관이 서류심사,</p>		<p>1. 조항 분리 기존법안 제4조 제2항이 본 수정법안에 분리 표시 됨</p> <p>2. 수입상품 검사 대해 서술, 중앙주관기관이 수입상품의 식품 위생관리법을 위반할 위험성 정도에 따라</p>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현장심사 및 표본 채취를 통해 상품 견본을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한 실험실에 보내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신고의무자는 별도로 중앙주관기관이 지정한 실험실에 실험비용을 납입 하는 것을 가리킨다. 검사결과가 규정과 부합하는 대상에 대해 검사 집행기관이 수입허가 통지를 발부한다.</p> <p>二. 발취검사 : 검사집행기관이 서류심사 후, 발취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 발취검사에서 발취될 확률은 1%에서 5% 되고, 강화 발취검사의 발취될 확률은 20%에서 50% 이다. 발취된 상품은 현장 심사 및 표본 검사를 통해 그 결과가 규정과 부합하면 검사집행기관이 수입 허가 통지를 발부한다. 단, 위생 안전의 우려가 있을 시 검사집행기관은 현장심사 혹은 표본검사를 하며, 검사 결과가 규정과 부합한 대상에 대해 검사 집행기관이 수입 허가 통지를 발부한다.</p> <p>三. 전수심사 : 검사집행기관이 발취검사 시, 미 발취된 상품에 대해 현장심사를 하여 그 결과가 규정과 부합하면 검사 집행기관이 수입 허가증을 발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 위생 안전의 우려가 있을 시 검사집행기관은 표본검사를 해야 하며 규정과 부합한 후 수입허가증을 발부한다.</p> <p>四. 검증등록 : 검사 신청 상</p>		<p>다른 검사 방식, 종류 및 과정을 명기하여 검사집행의 기본으로 삼는다.</p> <p>3. 검사신고의무자가 전수 검사대상인 상품을 수입할 경우 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수입식품검사 제도를 참조하여 본 조항 첫 번째 사항에 검사신고의무자가 별도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관련된 규정을 추가 명기함.</p> <p>4. 업자의 자주적 관리를 장려하고, 발취검사 실시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정법안 두 번째 사항에 발취검사를 일반 발취검사와 강화발취검사로 구분하여 그 발취될 확률 범위를 분별 규정</p> <p>5. 서면심사 방식은 단독 검사 방식으로 인정 하지 않으므로, 기존법안 4항 삭제</p> <p>6. 기존법안의 특정 상품으로 분류되는 감시검사 대상에 대해 집행기관이 수시로 발취하여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합격되면, 표본을 채취한 뒤 즉시 수입허가를 한다. 이후 만약 검사가 규정과 부합하지 않음이 발견되면, 법적이행을 하는데 곤란함이 생길 우려가 있어 기존법안 다섯 번째 항목 삭제</p> <p>7. 사항 순서 조정</p> <p>8. 문자 수정</p>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품을 중앙주관기관이 등록하는 것으로, 위생안전시스템 하에 모든 상품이 생산 제조 되었음을 인정하는 상호 계약에 속한다. 서류 검사를 통해 규정과 부합한지 확인 후에, 검사집행기관은 수입허가 통지를 발부한다. 단, 위생 안전에 우려가 있을 시, 검사집행기관은 현장심사 혹은 표본검사를 하여 규정과 부합한 지 확인 후, 수입허가 통지를 발부한다.</p>		
<p>제7조 검사 신청한 상품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면 전수 검사 방식을 실시 하며, 실험 분석 보고서를 첨부 제출해야만 검사집행기관이 검사를 시작한다.</p> <p>一. 국내 외 상품 관련 안전 정보 또는 과학적 증거에 의거하여 인체 위해함이 입증된 상품</p> <p>二. 중앙주관기관이 수입상품 연도 검사계획에 전수검사로 분류한 상품.</p> <p>三. 동일한 검사 신고의무자가 강화발체상품에 속하는 이 전 수입대상과 동일 생산지, 동일 수입 상품 품목 분류의 상품이며, 검사결과 불합격 처리된 것.</p> <p>四. 중앙주관기관이 위생 안전을 고려하여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품.</p> <p>이 전 상품의 전수검사 과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다시 동 상품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p>	<p>제5조 검사 신청한 상품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이면 전수검사 방식을 실시한다 :</p> <p>一. 국내 외 상품 안전 관련 정보 또는 과학적 증거에 의거하여 인체 위해함이 입증된 상품.</p> <p>二. 연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품.</p> <p>三. 감시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품.</p> <p>四. 이 전 검사신청 상품과 동일 생산지, 동일 상표로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상품.</p> <p>五. 중앙주관기관이 위생 안전을 고려하여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품.</p> <p>검사 과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재검사 신청 할 경우, 여전히 전수검사 방식으로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항 순서 변경 2. 검사신고의무자의 자주적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수검사에 속하는 품목과 검사신고의무자가 실험 분석 보고서 첨부 제출해야함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3. 수입 검사 실시를 위해, 중앙주관기관은 식품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위험 정도에 따라 수입상품연도검사계획을 정해 전수검사에 속하는 수입상품 품목 분류 및 중점 검사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4. 연간 검사 결과는 중앙주관기관이 연도검사계획을 정할 시 참고로 제공 되며, 현행법안 제1항의 두 번째 및 세 번째항 삭제 5. 기존법안 제1항 넷째항 「동일상표상품」을 「동일 수입품목 분류코드의 상품」으로 명시

수정법안	기존법안	설명
<p>면 여전히 전수검사 방식으로 처리한다.</p>		
<p>제8조 검사 신청 상품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면, 강화발체검사를 실시한다.</p> <p>一. 중앙주관기관의 「수입품목 연도검사계획」에 강화발체검사 대상으로 속하는 상품.</p> <p>二. 기존 전수검사 대상 상품이 동일한 검사신고의무자가 동일 생산지, 동일 수입 품목 분류코드의 상품을 연속 5번 수입하여 모두 합격 처리된 상품: 단 이 동일한 검사신고의무자가 연속 5번 합격 수입하기 전의 수입 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연속 5번의 수입량은 그 전 불합격 판정 받은 수입량의 3배이어야 한다.</p> <p>三. 기존 일반 발체 검사 대상 상품이나, 동일한 검사신청의무자가 동일한 생산지, 동일한 수입품분류의 상품을 수입하는데, 그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품.</p> <p>四. 중앙주관기관이 위생안전을 고려하여 강화 발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상품.</p>	<p>제7조 검사 신청한 상품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면 발체검사를 실시한다.</p> <p>一. 전수검사 전수심사 및 검증 등록 대상이 아닌 상품</p> <p>二. 기존 전수검사 대상 상품이 동일한 수입상 의해 동일 생산지, 동일 상표, 동일 제조자의 상품을 연속 5번 수입되며 검사 합격을 통해서 이후 같은 품목을 수입할 시 발체검사 방식으로 처리된다.</p> <p>三. 기존 전수검사 대상 상품이나 동일한 수입상이 연속 5번 심사 합격 받을 시, 이후 수입된 상품은 일반 발체 검사 방식으로 처리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체검사를 일반 발체 검사와 강화발체검사로 분리한 것에 대해 기존법안 제7조를 분리하여 본 수정법안 및 제9조로 분리 2. 강화발체검사에 속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 3. 수입 상품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중앙주관기관은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수입상품연도검사계획을 정해 강화발체검사에 속하는 수입 상품 품목 분류 및 중점 검사 항목을 명확히 규정한다. 4. 검사신고의무자의 자주적 관리를 권장하기 위해서, 연도검사계획의 전수검사 대상 품목이지만 검사신고의무자가 불합격 기록이 없다면, 즉 「연속 5번 수입한」 상품이 검사 합격을 받을 경우 강화발체검사 대상으로 바꾼다. 단, 검사신고의무자가 만약 심사 불합격 기록을 갖고 있고, 전수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교적 위험한 상품을 소량 분배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 수정법안에서는 「연속 5번 수입량이 3배」인 상품이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강화발체검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 3배량은 전 수입 시 불합격된 상품 수입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제9조 검사 신청 상품은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면 발췌검사를 실시한다.</p> <p>一. 중앙주관기관의 수입품목 연도검사계획에 일반발췌검사 대상으로 속하는 상품</p> <p>二. 기존 강화발췌검사 대상 상품이 동일한 검사신고의무자가 동일 생산지, 동일 수입 품목분류 코드의 상품을 연속 5번 수입하여 모두 합격 처리된 상품: 단 이 동일한 검사신고 의무자가 연속 5번 합격 수입하기 전의 수입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연속 5번의 수입량은 그 전 불합격 판정 받은 수입량의 3배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췌검사를 일반 발췌검사와 강화 발췌검사로 분리하여 기존법안 제7조를 수정법안 제9조로 분리 2. 일반발췌검사에 속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 3. 수입상품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중앙주관기관은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수입상품연도검사계획을 정해 일반발췌검사에 속하는 수입 상품 품목 분류 및 중점 검사항목을 명확히 규정한다. 4. 검사신고의무자의 자주적 관리를 권장하기 위해서, 연도검사계획의 강화발췌검사에 속하는 수입 상품이지만, 검사신고의무자가 불합격 기록이 없거나 혹은 전수검사에서 강화발췌검사로 변경된 대상이 「연속 5번 수입한」상품으로 검사 합격을 받을 경우 바로 일반발췌검사 대상으로 전환, 단, 검사신고의무자가 만약 심사 불합격 기록을 갖고 있고, 강화발췌검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교적 위험한 상품을 소량 분배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 수정법안에서는 「연속 5번 수입량이 3배」인 상품이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일반발췌검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 3배량은 이전 불합격 수입량을 기준
<p>제10조 검사 신청 상품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이면 전수 심사를 실시한다.</p> <p>一. 중앙주관기관의 수입상품</p>	<p>제6조 검사 신청 상품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이면 전수 심사를 실시한다.</p> <p>二. 상품 사용 목적이 기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항 순서 변경 2. 전수심사 대상 명확화 3. 수입 상품 검사를 실시하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u>연도검사계획에 전수심사 대상으로 속하는 상품</u></p> <p>二. <u>동일 검사신고의무자의 전 수입 상품과 동일생산지, 동일수입품분류에 속하는 상품으로 검사결과 중문 표시가 불합격인 것.</u></p> <p><u>전 항에 열거한 전수심사의 상품은 동일 검사신고의무자가 연속 5번 수입하여 모두 검사 합격 된 상품으로, 이후 동일한 상품을 수입 시 전수 심사를 면할 수 있다.</u> <u>단 이 동일한 검사신고의무자가 연속 5번 합격 수입하기 전의 수입 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연속 5번의 수입량은 그 전 불합격 판정 받은 수입량의 3배이어야 한다.</u></p>	<p><u>용도로 유출되어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위생 안전에 우려가 있는 상품</u></p> <p>二. <u>연간심사기록에 합격되지 않은 상품.</u></p> <p>三. <u>기존 전수검사 신청 대상이지만, 중앙주간기관 혹은 검사집행기관이 인정한 국내외 기관이 서명 발급한 검사 증명서 및 실험 분석 보고서 원본을 구비한 상품.</u></p> <p><u>전 항 세 번째 사항의 검사 증명 혹은 실험 분석 보고서 내용이 국가 위생 안전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u></p>	<p>기 위해, 중앙주관기관은 식품위생관리법 위반 정도에 따라, 수입상품연도검사계획을 정해 전수심사에 속하는 수입 상품류를 명확히 규정한다. 기존법안 제1항 두 번째 사항은 중앙주관기관이 연도검사계획을 정할 시 참고로 제공되므로 삭제하기로 한다. 또한, 수정법안 제1항 첫 번째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표시 규정을 위반한 수입상품에 관해서 수정법안 제1항 두 번째 사항에 추가하여 심사를 강화하였다.</p> <p>4. 수정법안 제7조에 이미 전수검사 품목 대상은 실험분석 보고서 첨부해야만 검사집행기관이 검사를 시작한다는 규정이 추가 되어 있어, 기존법안 제1항 세 번째 사항은 혼란을 막기 위해 삭제</p> <p>5. 검사신고의무자의 자주적 관리를 권장하기 위해서, 연도검사계획의 전수심사 품목 대상이더라도 검사신고의무자가 불합격 심사 기록이 없으면 즉, 「연속 5번 수입한」 상품으로 심사 합격을 받을 경우 전수심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단, 검사신고의무자가 만약 심사 불합격 기록을 갖고 있고, 전수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비교적 위험한 상품을 소량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 수정법안에서는 「연속 5번 수입량이 3배」인 상품이 심사 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전수심사 대상면제로 수정하였음, 3배량은 불합격된 수입량을 기준으로 함</p>

수정법안	기존법안	설명
	<p>제8조 검사 신청 상품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면 서면 통과를 실시한다.</p> <p>一. 발췌검사 작업 중, 미 발췌된 상품.</p> <p>二. 상호 인정한 국외기관이 서명 발급한 실험보고서, 검사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를 구비한 상품.</p>	<p>서면통과는 검사 방식에 속하지 않으므로, 본 기존법 조항 삭제</p>
	<p>제9조 검사 신청 상품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면 감시검사를 실시한다.</p> <p>一. 중앙주관기관이 연도감시계획 중 특정상품으로 지정한 것</p> <p>二. 국내 외 상품 안전 관련 정보에 따라 상품 특성 이해가 필요한 것.</p>	<p>본 기존법 조항 삭제</p>
	<p>제10조 검사 신청 상품을 중앙주관기관이 등록하는 것으로 위생 안전 시스템 하에 생산한 상품임을 인정하는 상호 계약에 속한다. 서류심사 또한 현장심사를 통해 규정과 부합되면 수입을 하게 한다.</p>	<p>검증등록 검사 방식은 수정법안 제6조에 이미 명확히 정의하였으므로, 이 기존법 삭제</p>
<p>제11조 검사 신청 상품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이면, 중앙주관기관이 기한을 두고 관련업체 및 수출 정부기관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불합격 원인, 개선계획 및 예방조치를 설명하게 한다. 심사 통과이후 원래 속하는 검사방식대로 진행한다.</p> <p>一. 동일 검사신고의무자가 전수검사에 속하는 동일 상품을 수입 시 두 번에 걸쳐 검사 불합격 된 상품.</p>		<p>一. 신 조항 추가</p> <p>2. 식품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상품이 재차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식품 수입 검사방법을 참고, 본 조항 추가</p> <p>중앙주관기관이 관련업체 혹은 수출국 정부기관에 개선계획 제출 요구근거 명확화.</p> <p>중앙주관기관이 이 수정법안 제1항 두 번째 사항 따라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을 통지하고 수입상품의 불합격</p>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u>二. 동일 생산지 혹은 동일 국가의 동일 수입 품목 분류인 상품으로, 불합격 기록이 6개월 내 3번에 달하는 상품.</u></p>		<p>원인 개선 계획 및 예방 조치를 설명하게 한다. 통지한 당일부터 재검사 신청하는 상품은 중앙주관기관에 의해 제7조 제1항 첫 번째 사항에 따라 전수검사에 속하게 된다.</p>
<p><u>제12조 수입상품은 아래 열거한 각 상황 중 하나이면, 중앙주관기관은 관련 업체 또는 생산지에 대해 검사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u></p> <p><u>一. 전 조항의 서면 자료가 심사 통과 되지 않은 상품</u></p> <p><u>二. 기한 이내 전 항의 서면 자료가 제출 되지 않은 상품, 혹은 기한 내 재차 검사 신청하는 수입 상품이 검사 불합격 된 상품.</u></p> <p><u>검사 신청이 잠정 중단된 상품은 관련 식품업체 및 수출국 또는 수출국 관련 정부기관이 중앙주관기관에 해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뒤 검사신청 접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u></p>		<p>수정법안 제11조에 부합하기 위해 본 수정법안을 추가하여, 검사 신청 접수 잠정 중단 및 회복 규범을 명시하였다.</p>
<p><u>제13조 검사신고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품 수입 15일 전부터, 수입항 소재지 관할 검사집행기관에게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u></p> <p><u>전 항의 검사신청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시, 대리인은 대리인 증명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한다. 검사신청 대리업무 영리 사업자는 위탁서</u></p>	<p><u>제12조 검사신청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품 수입 이 전 15일부터 수입항 소재지 관할 검사집행기관에게 검사신청한다. 단 검사집행기관이 따로 지점을 지정할 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u></p> <p><u>전 항의 검사신청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시, 대리인은 대리인 증명 서류를 추가 구비</u></p>	<p>一. 본 조항 순서 변경</p> <p>二. 검사신청무자가 검사신고 의무자로 변경되었음.</p>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를 구비하여 집행기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p>	<p>하여야 한다. 검사신청을 대리 업무하는 영리 사업자는 위탁서를 구비하여 집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4조 검사집행기관이 상품 검증, 심사 혹은 증명서 발부를 처리할 시, 검증비, 심사비 및 증명서 발행 비용을 징수한다.</p> <p>전 항의 각 비용 징수는 상품 검사법 제7장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p>	<p>제14조 검사집행기관이 본 방법에 의거하여 상품검증, 심사 혹은 증명서 발부를 처리하며, 검증비, 심사비 및 증명서 발행 비용을 징수한다.</p> <p>전 항의 각 비용에 대한 <u>비율 및 징수</u>는 상품 검사법 제7장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p>	<p>문자 수정</p>
<p>제15조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견본은 검사집행기관이 식품수입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채취를 하며, 견본을 채취한 뒤 견본 증명서를 발급하여 세관원 및 검사신고의무자에게 준다.</p>	<p>제15조 검사에 필요한 모든 견본은 검사집행기관이 식품수입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채취를 하며, 견본을 채취한 뒤, 견본 영수증을 발급하여 세관원 및 수입업자에게 주어 <u>참고</u> 보관하게 한다.</p>	<p>1. 수입업자를 검사신고의무자로 변경함. 2. 문자수정</p>
<p>제16조 검사하는 견본은 검사요원이 수시로 채취하고, 검사신고의무자가 지정할 수 없으며 그 수량은 검증 및 견본 보관에 충분할 정도로 채취한다.</p> <p>수입 상품이 항구에서 채취하기 힘든 것은 검사집행기관이 견본 발취 지점을 지정한다.</p>	<p>제16조 검사하는 견본은 검사요원이 수시로 채취하며, <u>업체</u>가 지정할 수 없으며, 그 수량은 검증 및 견본 보관에 충분할 정도로 채취한다.</p> <p>수입 식품이 항구에서 채취하기 힘든 것은 검사집행기관이 견본발취 지점을 지정한다.</p>	<p>1. <u>업자가</u> 검사보고의무자로 변경됨</p>
<p>제17조 검사집행기관이 견본 채취 시, 세관이 검사하는 상품에 대한 검증 작업에 협력해야 한다 ; 세관의 검사 면제 컨테이너에 대해 <u>검사집행기관</u>은 견본 채취 이전에 먼저 세관 창고 관리원 혹은 자체 관리업자의 전문 책임자에게 통지한다.</p>	<p>제17조 검사집행기관이 견본 채취 시, 세관의 <u>화물</u> 검사에 대한 검증 작업에 협력해야 한다 ; 세관의 검사 면제 컨테이너에 대해 견본 채취 이전에 먼저 세관 창고 관리원 혹은 자체 관리업자의 전문 책임자에게 통지한다.</p>	<p>문자 수정</p>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제18조 검사는 견본 채취 선후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본 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재 검사 대상자는 원 검사 실험실에서 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p>	<p>제18조 검사는 견본 채취 선후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본 방법 규정에 의거하여, 재 검사 대상자는 검사집행기관의 미리 검사를 한다.</p>	<p>문자 수정</p>
<p>제19조 수입검사 실시함에 있어, 견본 발취 후 실험실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간이 5일을 넘기거나 컨테이너 야드에서 견본 채취가 어려운 상품 및 쉽게 부패되기 쉬운 상품은 검사 집행기관의 검사 필요에 의해, 선 반입 수입 통지서를 통관용으로 제공한다. 단 전수검사의 상품은 여전히 잠정 보류 조치를 한다.</p> <p>전 항의 선 반입 통과된 상품은 검사신고의무자가 안전 유지 및 보관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서의 보관 지점과 실제의 보관 지점이 다르거나 수입 허가 통지서 발부 전에 자의적으로 반입하는 상품은 검사집행기관이 6개월 내에 잠정 검사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p>	<p>제11조 전수검사 전수심사 혹은 발취검사 작업 중, 검사집행기관이 검사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먼저 「선 반입 수입 통지서」를 발부하여 통관 시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선 반입 수입 통지서 대해 위생 안전의 우려가 있을 시 검사집행기관이 통지한 지점에 위생주관기관의 파견원을 예정된 지점에 보내어 상품을 봉쇄 처리 한다. ; 그 실시 대상은 아래와 같다.</p> <p>一. 검사실이 필요한 검사시간이 5일을 초과하거나 컨테이너 야드에서 견본 채취가 어려운 경우, 검사 집행기관에게 선 반입 수입 허가서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상품.</p> <p>二. 발취 검사 작업 중 선 반입 수입 보증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상품</p> <p>전 항의 봉쇄 처리된 상품의 안전 유지 및 보관에 관해 화주는 자체 책임을 진다. 봉쇄 처리된 상품이 반입허가 전 자의적으로 이동한 상품은 형법 제139조 규정에 의해 사법기관으로 송부 처리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조항 순서 변경 2. 문자 수정 3. 전수검사의 상품은 잠정보류 조치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4. 기존법안 제21조 첫 번째 및 두 번째 사항에 선반입 수입될 요건을 수정법안 첫 번째 사항에 병합 명기함 5. 선 반입 수입 상품의 추적관리 실시를 위해서, 수정법안 제2항에 선 반입 수입상품의 실제 보관 지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만약 검사신고의무자가 보증한 위치와 다를 경우 혹은 수입 허가 통지 전 자의적으로 반입한 상품은 검사집행기관이 6개월 동안 이 검사신고의무자의 선 반입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p>제20조 수입 상품이 검사 합격된 후, 검사신고의무자는 검사 집행기관에게 서면 수입 허가 통지서 발부를 신청한다. 검사신고의무자는 검사 합격된 15일 이내에 이 견본 채취</p>	<p>제19조 수입 상품이 검사 합격된 후 검사집행기관은 검사결과를 수입 업자에게 통지하여 그 여분의 견본을 반환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된 상품은 그 여분의 견본을 검사 재신청 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자수정 2. 검사결과가 불합격인 여분의 견본 처리규정에 대해, 수정법안 제22조까지 명기함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증서 제출하면 여분의 견본을 회수 할 수 있다. 단 그 견본 보존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검사 집행기관은 직접 바로 처리한다.</p>	<p>간이 초과할 경우 바로 소각 폐기한다. 전 항의 여분 견본의 반환에 대해, <u>검사신청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견본 채취 증서를 구비하여 견본을 수취한다.</u> 단 그 견본의 보존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검사집행기관은 그것을 직접 소각 폐기 한다.</p>	<p>3. 수입업자를 검사신고의무자로 수정함.</p>
<p>제21조 검사 결과가 불합격된 상품은 불합격 통지서를 검사 신고의무자에게 발행하며 통지서 수령 후 15일 내에 원 검사 실험실에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실험실은 검사 비용 기준에 따른 재검사 비용 수납을 대리 처리한다. 재검사 신청은 1회로 제한하고, 원 검사 실험실에서 여분의 견본으로 재검사를 한다.</p> <p>전 항의 검사 불합격 상품의 여분의 견본은 검사 재신청 기간이 초과할 경우 바로 폐기 처리 된다.</p>	<p>제20조 상품 수입업자는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15일 이내에 이유 및 필요자료를 갖추어 원 검사집행기관에 재검사 신청을 한다. 재검사를 접수한 기관은 여분의 견본으로 상품을 재검사한다. 재검사 신청은 1회로 제한하고, <u>재검사 비용 및 검증 비용을 수납 처리한다.</u></p>	<p>1. 검사비용을 검사보고의무자에게 부담</p> <p>2. 수입업자가 검사보고의무자로 수정됨.</p> <p>3. 문자 수정</p>
<p>제22조 수입 상품이 검사 불합격 된 경우 아래 방식 중 하나로 처리 한다.</p> <p>一. <u>검사신고의무자에 의해 반송 및 폐기 처리.</u></p> <p>二. 중앙주관기관의 법 규정에 따라 개조를 허가한 상품은 <u>검사신고의무자가 허가 공문을 가지고 원 검사집행기관에 원 보증서로 선 반입 통과 신청을 한다.</u> 개조 완성 이후 각 지역의 위생주관기관에게 검사 합격을 받은 후 판매를 개시 할 수 있다.</p> <p>三. 중앙주관기관 혹은 검사집</p>	<p>제21조 수입 상품이 검사 불합격 된 경우 아래 방식 중 하나로 처리 한다.</p> <p>一. <u>수입업자에 의해 반송 및 폐기 처리.</u></p> <p>二. 중앙주관기관의 법 규정에 따라 개조를 허가한 상품은 <u>업자가 허가 공문을 가지고 재검사를 하도록 보증서로 선 반입 통과 신청을 한다.</u> 개조 완성 이후 각 지역의 위생주관기관에게 검사 합격을 받은 후 판매를 개시 할 수 있다.</p> <p>전 항의 불합격 수입상품이 보증서를 제출하여 선 반입 된</p>	<p>1. 업자를 검사신고의무자로 수정함</p> <p>2. 문자 수정</p> <p>3. 증문표시 불합격 처리방식을 추가함. 단 업자가 자체 관리하는 있어 업자에게 보완 수정 완성 책임을 지게 함</p>

수 정 법 안	기 존 법 안	설 명
<p>행기관이 법 규정에 따라 보완 수정 표시한 상품은 검사신고 의무자가 허가 공문을 가지고 <u>원 검사집행기관에게 원 보증서로 선 반입 통과 신청을 한다.</u> 보완 수정 표시가 합격된 후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p> <p>전 항의 불합격 수입상품이 보증서를 제출하여 선 반입 된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회수할 것을 명하고 반송, 소각 혹은 법에 따른 개조를 하게 한다.</p>	<p>경우, 중앙주관기관은 회수할 것을 명하고 반송, 소각 혹은 법에 따른 개조를 하게 한다.</p>	
<p><u>제23조</u> 검사원이 본 방법에 의거하여 외부에서 검사 집행 업무를 할 경우, 신분증과 명확한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p>	<p><u>제22조</u> 검사원은 이 방법에 의거하여 외부에서 검사집행 업무를 할 경우 신분증과 명확한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u>항구의 검사원도 제복 착용을 하여야 한다.</u></p> <p><u>전 항의 제복 모양은 중앙주관기관이 그것을 정한다.</u></p>	<p>제복 관련 규정은 삭제</p>
	<p><u>제23조</u> 수입상품 검사신청 및 증서 배부 작업 관련하여, 경제부 「<u>상품검사법</u>」 제32조 및 제34조 관련 규정에 따라 그것을 처리한다.</p>	<p>수정초안에서 검사 및 증서 배부와 관련된 작업 과정을 정함에 있어, 기존법안에서 삭제하여 실제와 부합하도록 조취</p>
<p>제24조 본 방법은 <u>2007년 7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제24조 본 방법은 <u>발포일</u> 부터 시행한다.</p>	<p>수정법안은 7월 1일부터 현장 적용되고 있음</p>